

## 부속서 I

### 주해

1. 제10.8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부속서상 유보목록은 다음에 당사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한 유보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5조(이행요건); 또는

다. 제10.6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2.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에 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3.1)를 참조한다. 적절한 ISIC 코드가 해당 분야 혹은 그 하위 분야에 대해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도의 경우 이러한 유보는 인도정부 중앙통계국에 의하여 제시된 인도산업분류코드(NIC 1987)를 참조한다. 한국의 경우, 해당 유보에 대하여, 한국통계청에 의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2000)를 참조한다.

3. 각 유보목록의 기재는 아래 항목을 규정한다.

가. 분야는 그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국제표준산업분류코드(ISIC 3.1) 혹은 국내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00년, 인도산업분류코드 1987년)에 따라서,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 즉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과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바. 유보조치<sup>1)</sup>는 그 기재가 이루어진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항목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자로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10.8 조제1항가목에 언급된 의무와 그 조치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인도의 경우, 각 유보안에 표시된 조치는 인도헌법 제73조 및 제246조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다.

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사. 유보내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상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그 기재가 이루어진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4. 유보목록 기재를 해석함에 있어서, 산업분류를 제외한, 기재의 모든 항목이 고려된다. 유보목록 기재는 기재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해석된다.

가. 조치 항목이 유보내용 항목의 자유화 약속에 적합하다면, 그와 같이 적합한 조치 항목이 그 밖의 모든 항목에 우선한다.

나. 조치 항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조치 항목과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항목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항목이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조치 항목이 그 밖의 모든 항목에 우선한다. 불합리한 경우에는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 그 밖의 항목이 우선한다.

5. 인도의 경우, 이 장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외국인기관투자자”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외국인기관투자자로서 등록된 외국 실체를 뜻한다.

나. “비거주민”이란, 인도 거주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다. “인도거주민”이란,

1) 그 전 재정해 동안에 인도에서 182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ㄱ) 인도에서 출국한 자이거나,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인도 밖에서 취직되었거나 구직하기 위한 경우, 또는

b) 인도 밖에서 사업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c)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불명확한 기간 동안 인도 밖에서 거주하기 위한 의도를 내보이는 경우

ㄴ) 인도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인도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인도에서 취직되었거나 구직하기 위한 경우, 또는

b) 인도에서 사업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c)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불명확한 기간 동안 인도

에서 거주하기 위한 의도를 내보이는 경우;

- 2) 인도에서 등록되었거나 설립된 단체 또는 개인
- 3)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무소, 지사 또는 대행기관
- 4) 인도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무소, 지사 또는 대행기관

라. “비거주 인도인”이란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인도 국민 또는 인도계 출신을 뜻한다.

마. “인도계 출신자”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는 스리랑카 국민을 제외한 국민을 뜻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항시 인도 여권을 소지하는 자, 또는
- 2) 인도 헌법 또는 1955년 인도국적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인도국민이었던 경우, 또는
- 3) 배우자가 인도국민이거나 1) 또는 2) 항목에 해당하는 자

바. “벤처 캐피털 자금”이란 1996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 벤처캐피탈자금규칙에 의하여 등록되고 신탁 또는 사단체를 포함하는 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자금으로서 같은 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모집된 일정 사업목적에 제공된 자본을 갖추고 나아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인도 벤처캐피탈 사업체에 투자한 것을 말한다. 인도 벤처캐피탈 사업체는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로 그 지분이 인도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금지목록에 해당하는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6.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제6장에 부속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목록만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에 관한 제10장의 제10.5조(이행요건) 및 제10.6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는 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5조(이행요건) 및 제10.6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의 투자에 관한 유보는 제10장(투자)의 부속서 I 및 II에만 명시되어있다.

이 장(제10장 투자)의 약속과 서비스 장(제6장)의 약속 간에 어떠한 불합치가 있을 경우, 불합치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장이 우선한다.

8. 한국의 경우, 유보안 5번과 8번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양당사국은 동 협정의 발효일 이후부터 유보안 상의 개별유보안의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및 유보내용에는 어떠한 추가, 삭제 및 변경을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그러나, 유보 조치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보안에 있는 유보내용과 관련된 법의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유보조치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속서 1**  
대한민국 유보목록

1.

분 야	농축산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01212 육우 사육 한국표준산업분류 51312 육류 도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22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 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55호, 2008.2.29)
유보내용	외국인은 1)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2) 육우사육업 또는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폐지계획	없음

2.

분 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 운송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제 132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2조, 제298조 및 제299 조 (국토해양부령 제12호, 2008.5.8)
유보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기의 소유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 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마.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법상에 따라 설립된 기업
폐지계획	없음

3.

분 야	해도제작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법률 제4986호, 1995.12.6)
유보내용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폐지계획	없음

4.

분야	모든 제조업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조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그리고 제27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제15조, 제16조 그리고 제17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유보내용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매년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폐지계획	없음



5.

분 야	저공해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리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조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법률 제 9036호, 2008.3.2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제21033호, 2008.9.25)
유보내용	자동차 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06년 1.5%)에 따라 매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 판매자는 위 계획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급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지계획	없음

6.

분 야	화학용품의 제조
하위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24212 생물학 제품 제조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조치	약사법 제42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1호, 2008.10.16)
유보내용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 내의 혈액관리 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폐지계획	없음

7.

분 야	출판
하위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 (신문 제외)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조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 제13조 및 제26조 (법률 8852호, 2008.2.2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유보내용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  
할 수 없다.

-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 다.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외국정기간행물의 출판을 위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국  
내에 설치하고자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협정 발효일부터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해당 정기간행물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 편집된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원어로 이를 인쇄, 배  
포할 수 있다.

폐지계획 없음

8.

분 야	농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축산법 제24조 및 제27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종자산업법 제142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사료관리법 제6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인삼산업법 제20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22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 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55호, 2008.2.2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부고시 제2008-17호, 2008.5.16)
유보내용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대한민국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3조(내국민 대우)는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폐지계획	없음

9.

분 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 (법률 제8985호, 2008.3.21)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2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제22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 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55호, 2008.2.29)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증권업 감독규정 제7-6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2008.7.3)
유보내용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폐지계획	없음

10.

분 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가스 산업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조치	공기업을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제19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증권거래법 제203조 (법률 제8985호, 2008.3.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 (2008.3.28)
유보내용	외국인이 총합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총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폐지계획	없음

11.

분 야	모든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조치	이 협정문의 발효일 이후부터 현존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서비스 장에 대한 의무를 위반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폐지계획	없음

**부속서 1**  
인도공화국 유보목록

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인도 영토 밖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실체를 포함한, 인도 영토 밖의 거주민은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방식에 따라서 인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인도회사 투자와 관련된 외국기관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펀드는 적용규제가 각기 다르고, 때때로 변경될 수 있다. 비거주인도인은 포트폴리오투자 규제방식 하에서는 공인된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여기에 상장된 인도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비거주인도인은 포트폴리오투자 규제방식 하에서는 상장된 인도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 또는 그 회사채의 각 계열의 납입금액의 최고 5%까지 이익금의 본국송환 및 미송환 원칙 하에서 투자할 수 있다.

모든 비거주인도인들에 의하여 구입된 주식/전환사채 납입금액의 전체는 그 회사의 납입자본금/그 회사의 회사채의 각 계열의 납입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인도회사의 사원총회가 그 효력에 대한 특별 결의를 통과시킨다면, 10퍼센트의 총합계 최대한도를 24퍼센트로 높일 수 있다.

인도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는, 비거주인도인이 주식거



래소에서 포트폴리오투자 규제방식 하에 구입한 주식은 인도 내의 거주민에게 또는 인도 밖의 주민에게 개인적으로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

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인도 조합 및 (사단 및 신탁을 포함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인도인 및 인도계 출신자는 그러한 투자가 본국으로 보내지 않는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면 동업조합, 그 밖의 비법인 단체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가 본국으로 보내기 위함이라면 인도중앙은행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포트폴리오 투자 규제방식 아래의 외국기관투자자 또는 비거주인도인의 총 소유주가 규제발동한계수준에 다다를 때, (규제발동한계수준이란 적용 한도에서 2퍼센트 아래인 경우를 말하며, 100억 루피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가진 회사의 경우 규제발동한계수준은 적용한도의 5퍼센트 아래에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지정된 모든 은행 지사에 특정인도회사가 주식을 그보다 더 구입할 경우 사전 승인요구를 공시할 것이다.

외국기관투자자가 주주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도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승인을 해준다. 이것은 선착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외국기관투자자/비거주인도인의 주식이 총체적 한도/분야별 상한/법에 규정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인도중앙은행은 그 회사를 금지 목록에 올린다.

회사가 한번 금지 목록에 오르면, 어떠한 외국기관투자자 또는 비거주인도인도 포트폴리오 투자 규제방식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없다.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방식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외환  
거래관리규제법 규정 첨부목록 1

포트폴리오투자규제방식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외환  
거래관리규제법 규정 첨부목록 2

포트폴리오투자규제방식에 따라 인도 비거주인도인/인도  
계 출신자에 의한 투자를 위한 외환거래관리규제법 규정  
첨부목록 3

본국 미송환 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투자규제  
방식을 제외한 비거주인도인/인도계 출신자에 의한 주식  
거래에서의 주식 구매에 의한 투자를 위한 외환거래관리  
규제법 규정 첨부목록 4

외국인 벤처캐피탈펀드에 의한 투자를 위한 외환거래관  
리규제법 규정 첨부목록 6

인도 회사란 1956년 인도 회사법에 따라 인도에서 설립  
된 회사를 가리킨다.

2.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에서 2005년 12월 1일 현재 법률에 적용되는 동일 분야의 현존하는 합작 사업 또는 상표/기술 협력 협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동승인 경로가 적용되는 투자일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같은 분야는 1987년 인도산업코드 4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제안된 투자가 현존하는 합작회사 또는 기술 협력과 동일한 인도산업분류 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활동이라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될 것이다.

단,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인도 증권거래 위원회(SEBI)에 등록된 벤처 캐피털 자금 투자일 경우
- 나. 어느 쪽 당사국이든 현존하는 합작 투자가 3% 미만일 경우
- 다. 현존하는 합작/협력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 라. 동일한 영역에 대한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채굴 분야의 투자일 경우
- 마. 다국적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유보조치

정부정책(언론발표 1(2005) 및 언론발표 3(2005))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인도 회사의 지분이나 전환사채의 이전에 관하여 규율하는 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규정 9(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의 조건

3.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중앙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한이 명기되어있는 통지를 통하여 1999년 인도외환거래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제약 혹은 승인된 허가를 정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중앙 정부는 적합하다고 생각할 시에, 1999년 인도외환거래관리법 행정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도중앙은행에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내용의 지시를 인도중앙은행에 내릴 수 있다.

1999년 인도외환거래관리법의 어떠한 조항, 혹은 어떠한 규정, 명령 및 지시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관여 회사와 위반이 행해질 시 관여했던 자, 사업 관리 책임자는 인도외환거래관리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반이 이루어졌거나 본인은 그러한 위반을 막기 위하여 정당한 모든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유보조치

1999년 외환거래관리법 제40부, 제41부, 제42부

산업(개발 및 규제) 법(1951), 인도의 증권 및 거래 이사회 법률(1992), 외국인기부(규제)법(1976), 외국인 무역(개발 및 규제)법(1976), 인도 중앙은행법(1934), 은행규제법(1949), 증권계약(규제)법(1956), 자금세탁방지법(2002), 소득세법(1961), 극소, 중소기업 개발법(2006), 관세법(1962), 중앙 소비세법(1944), 인도표준국법(1986)

4.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극소, 중소기업에 의한 제조업에 유보된 항목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중앙 정부는

가. 해당국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산업경제 증진과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 공동체의 물적 자원의 소유권과 관리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1) 그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원조치, 규제 면제 및 그 밖에 우호적 대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산업주체들을 식별할 수 있다.

(2) 그러한 소회사 및 소규모 산업체를 지원하는 조치, 면제사항 그리고 다른 호의적인 대우를 명시할 수 있다.

(3) 어떤 산업체가 이 장의 목적상 소회사, 혹은 소규모 회사로 판명될 수 있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밖의 입법목적을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체와 관련하여서 여타의 조건들이 마찬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소규모 산업부문에 유보된 물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외국인 지분 24%를 초과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동의를 요구된다. 24%를 초과하는 외국인 지분을 갖는 그러한 사업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중앙정부는 1951년 인도산업개발규제법의 계획 1에 따라 분류되는 어떠한 산업이든지, 상품 제조 및 생산에 관여

하는 기업들을 1)극소기업, 2)소기업, 3)중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앙정부는, 때때로 극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증진 및 강화시키고, 그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기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 프로그램, 지침 또는 지시를 통지할 수 있다.

소규모 산업부문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50% 수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단위에만 허용되는 품목을 생산할 수 있다.

산업활동의 단위주체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과 장비에 관한 투자에 의하여, 서비스업의 경우 기자재에의 투자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로 분류된다.

#### 유보조치

1951년 산업(발전 및 규제)법 - 11B 절

2006년 극소, 중소기업발전법 - 7절

5.

**분 야**

원자력 에너지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소

핵 연료의 제조와 공급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처분

방사성 동위 원소와 방사능 발전 설비

핵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

계획, 유지 그리고 수리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외국인직접투자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조치**

원자력 에너지 법 (1962)

산업(개발 및 규제) 법 (1951)

2000년 인도외환거래관리규정 규정 5(1)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 첨부목록 1 부속서 A (B)

언론발표 4(2006)

6.

분 야

씨트펀드 사업, 니디 , 양도권부 개발권, 농업과 플랜테이션(차 플랜테이션 제외), 부동산 사업(건설 개발 제외)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인도 영토 밖의 거주민은 동업조합,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든 아니든 어떠한 실체에도 다음의 경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제안할 경우의 사업에는 투자 할 수 없다.

가. 씨트 펀드의 사업 또는

나. 니디회사 또는

다. 농업, 플랜테이션 사업 또는

라. 부동산 사업, 농장 주거지의 건설 또는

마. 양도권부 개발권의 거래

- 1) 씨트란, 씨트, 씨트펀드, 씨티, 쿠리, 혹은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리든, 합의서에 구체적인 사람 수를 명시하고 모든 이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분할불입금으로써의 특정한 금액 혹은 곡물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각 서명자는 요구에 의해서든, 또는 경매 및 입찰이든 서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여 받는 거래를 뜻한다.
- 2) 니디 혹은 상호공제조합이란, 중앙정부가 니디 회사 혹은 상호공제조합으로 관보에 공표한 통지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 3) 부동산 사업 분야에는 종합 상업 시설, 주택 공급, 도로 및 교량 등의 건설 개발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양도권부 개발권이란 보상금 없이 토지소유자가 포기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된 토지 범위에 대하여 그 포기의 대가로 발행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정부공인증서를 가리킨다.



인도 비거주자는 서비스 지역의 개발, 주거목적의 토지 공사, 비즈니스 센터 및 오피스를 포함한 주거용 및 상업용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도로 및 다리를 포함한 구역, 도시 및 지역 수준의 도시 기반의 개발, 건축자재 제조에 대한 투자, 위에 언급한 모든 것에 대한 참여적인 벤처에 대한 투자, 최소한의 자본화 또는 개발을 위한 최소 영역 또는 투자금 확보의 조건이 없는 주택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유보조치

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규정 4b (허용되는 자본 계좌 거래)

시트자금법(1982)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그 이하

시트자금법(1956)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그 이하

7.

분 야

도박, 베팅, 복권

하위분야

산업분류

복권 -인도산업분류 840 및 841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외국인 투자는 복권 사업, 도박 그리고 베팅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 기술 합작 또는 외국 합작자의 프랜차이즈/상표/브랜드의 사용, 또는 위탁경영계약 등은 복권 사업, 도박 그리고 베팅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외국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 투자,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비거주인도인 투자, 그리고 외국인 벤처 자본 투자자들에게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유보조치

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규정 5(1)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 별표/부칙 1 부속서 A (B)

언론발표 5(2002)를 통한 정부정책

8.

분야	소매업 교역(단일 브랜드 소매 상품은 제외)
하위분야	
산업분류	소매업 교역 인도산업분류 65-68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p>단일 브랜드 소매 상품 거래를 제외하고는 소매업 거래에 외국인 투자는 금지된다.</p> <p>그러나, 단일 브랜드 제품 소매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외국인직접투자는 51%까지 허용된다.</p> <p>가. 제품은 단일 브랜드로만 판매되어야 한다.</p> <p>나. 제품은 국제적으로 같은 브랜드 하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p> <p>다. 단일브랜드 제품 소매업은 오직 제조업 브랜드 제품에만 적용된다.</p>
유보조치	<p>2000년외환관리법규정 규정 5(1)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 첨부목록1 부속서 A (B)</p> <p>언론발표 3(2006. 2. 10)</p>

9.

분 야

토지 취득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인도외환거래관리규정 및 그 하위 규정 하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도 밖에 거주하는 자는 인도의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다.

인도인인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자의 경우,

- 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농지, 재배지 또는 농가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다.
- 나. 인도내의 부동산을 인도내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다. 농지 또는 재배지 또는 농가를 제외한 부동산을 인도 밖에 거주하는 인도국민 또는 인도계 출신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인도계 출신일 경우,

- 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농지, 재배지 또는 농가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다.
- 나. 인도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인도국민 또는 인도계 출신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이로부터 농지, 재배지 또는 농가를 제외한 어떠한 부동산도 증여의 형태로 획득할 수 있다.
- 다. 인도 거주민으로부터 또는 인도 밖의 거주민으로부터 상속의 형태로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인도 밖의 거주민일 경우 부동산을 획득했을 당시의 유효한 외환거래 관련 법률의 조항 또는 인도 외환거래관리법 규정 조항에 따라 획득했어야 한다.
- 라. 농지, 농가 또는 재배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인도 거주민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마. 인도국민이면서 인도에 거주하는 자에게 인도의 농지, 농가 또는 재배지를 증여 또는 판매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바. 인도 밖의 인도출신 거주민 또는 인도 밖의 거주민 또는 인도 내의 거주민에게 인도 내의 상업 또는 주택 부동산을 증여의 방식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인도에 지사, 사무소(연락사무소 제외) 또는 그 밖의 사업근거지를 설립한 경우에만 인도 내에서 허용된 활동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 내에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단 적용되는 법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입할 시 인도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보조치

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규정 5 (인도에서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

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인도에서의 지사 또는 다른 사업공간 설립) - 별표/부칙 1을 포함하여 인도 영토 밖에 거주하는 자의 지사에 허가된 활동

재산권 이전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칙, 규정, 공고, 정책, 지침 및 회보

등록법(1908) 및 그 하위 규칙, 규정, 공고, 정책, 지침 및 회보

인도 인지세법(관할권 내의 거래에 관련하여서는 각 주에 의하여 개정되어졌을 수 있음) 및 그 하위 규칙, 규정, 통지, 정책, 지침 및 회보

10.

분 야	농업
하위분야	농업과 플랜테이션
산업분류	00(농업); 01(플랜테이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p>농업 및 플랜테이션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가. 농업 및 연관 분야와 관련된 통제된 조건과 서비스 하*에서의 화초재배, 원예학, 종자 개발, 축산업, 어업 그리고 채소, 버섯 등의 재배는 자동적으로 100%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된다.</p> <p>나. 차 플랜테이션을 포함한 차 분야에 있어서는 1) 외국인 투자자는 5년 안에 인도측 동업자 또는 인도 공공기관에게 26%의 지분을 매각할 의무를 지고, 2) 미래에 토지사용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 발생할지에 관하여 주정부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인도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된다.</p>
유보조치	<p>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규정 4 (b) (허용되는 자본 계좌 거래)</p> <p>2000년 외환거래관리법규정 (인도 영토 밖에 거주하는 자에 의한 증권의 이전 및 발행) - 첨부목록 1의 부속서 A(B)</p> <p>정부 정책 - 언론발표 4(2006)</p>

\* '통제된 조건 하에서'란 플랜트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강력히 조작된 비자연적 환경을 말한다. 통제된 조건의 일반적 특징은 경작, 비옥화, 잡초 및 해충 제거, 관개 또는 화분에 심기, 깔짚 덮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재배 작업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농업 및 연관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는 해충 제거, 물주기, 감염된 줄기의 가지치기, 관개시스템 작동, 동물 털깎기 및 가축 서비스(수의 서비스 제

외), 종묘 및 원예 서비스, 토양 보존 서비스, 토양 탈염 서비스, 수확, 탈곡, 토지 정리, 토지 배수 서비스를 포함한다.

11.

분 야	광업
하위분야	추출을 포함하는 채굴 및 다이아몬드와 귀금속(금, 은) 채굴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33 인도산업분류 156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1957년 광업 및 광물 (개발 및 규제) 법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는 100%까지 인정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자는 동일한 분야 또는 특정한 광물에 있어서 현존하는 합작 기업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보조치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 법(1957), 그 하위 규칙, 규정, 공고, 정책, 지시, 지침, 및 회보)  산업(개발 및 규제) 법(1951), 그 하위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언론발표 4(2006) 및 언론발표 7(2008)을 통한 정부정책



12.

분 야	채굴과 채석
하위분야	석탄 광업, 이탄 추출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0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가. 전력 프로젝트, 나. 철과 강철, 다. 시멘트 생산 및 라. 1973년 석탄광(국유화)법 및 규칙, 규제, 공고, 정책, 지시사항, 지침 및 회람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른 적합한 활동에 의한 석탄 및 갈탄 광업은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승인 경로에 따라 100%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가능하다. 그 밖의 활동을 위해서는 석탄 광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조치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 법(1957), 그 하위 규칙, 규정, 공고, 정책, 지시, 지침, 및 회보  석탄 광업법(1973), 제3절

13.

분 야

채굴과 채석

하위분야

우라늄 및 토륨 광석의 채굴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4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 하에서 우라늄과 토륨광석은 “원자광물”이다.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 규정 하에서,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는 면허 혹은 임차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답사 허가 및 탐광 면허, 경우에 따라서는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과 그 하위법률 하에 허가 받은 채굴 임차권의 조항과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에서만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의 사람에게만 답사, 탐광 허가증 혹은 채굴 임차권을 인가한다.

가. 인도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1956년 인도회사법의 3절의 하위1절에 해당되는 인도 회사 그리고

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의 유보목록1에 명기된 어떠한 광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답사 허가증 또는 채굴 임차권을 수여할 수 없다.

설명 - 이 하위 절의 목적상, 인도 국적은 다음의 조건 하에 규정한다.

가. 회사 및 다른 협회일 경우에는 구성원들 모두가 인도 국민이어야 함.

나. 개인의 경우에는 인도 국민에게만 해당됨.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의뢰에 따라 원자

광물 개발(1960년 광업면허규정)을 포함한 광물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유보조치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 1960년 광업면허 규정, 그리고 그 하위 다른 정책, 규칙, 규정

원자력 에너지 법(1962), 그 하위 정책, 규칙, 규정, 지시

14.

분 야

채굴과 채석

하위분야

철광석, 금속 광석, 비금속 광물, 철광석 채굴(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2, 13, 15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비연료 및 비원자 광물에 대한 광업은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을 포함한 적합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된다.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 규정 하에,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는 면허 혹은 임차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답사 허가 및 탐광 면허, 경우에 따라서는 광업 및 광물개발규제법과 하위법률 하에 허가 받은 채굴 임차권의 조항과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에서만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를 수행한다.

정부는 답사허가, 탐광면허 또는 광업 임차권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만 부여한다.

가. 인도 국민, 또는 1956년 회사법 제3절의 하위 1항의 조건과 부합하는 회사 그리고

나.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유보목록1에 규정된 어떠한 광물에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사전의 승인 없이는 탐광허가 또는 광업 임차권을 받을 수 없다.

설명 - 이 하위 절의 목적 상 인도 국적자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 및 다른 협회일 경우에는 구성원들 모두가 인도 국민이어야 함.

나. 개인의 경우에는 인도 국민에게만 해당됨.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의뢰에 따라 광물 개발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원자광물의 개발을 포함하여 그러한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1960년 광물면허규정)

채굴 임차권 소지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 경영자/책임자, 고용인, 계약자 또는 전차인이 제거 또는 소비한 어떠한 광물에 대해서도 명기된 기간 비율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 유보조치

광업 및 광물법(개발 및 규제) 제5절 및 제9절

15.

분 야	그 밖의 채굴과 채석
하위분야	돌, 모래 그리고 흙 채석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50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그 밖의 채굴과 채석은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의 3절 아래의 비주요광물로 분류된다. 지역 정부는 광석채굴 공사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유보조치	광업 및 광물법 (1957년, 제67번)  광물면허규정 (1960년)

16.

분 야

광물과 광석을 함유하는 티타늄

하위분야

티타늄 광석의 채굴과 생산(티탄 철광, 금홍석 및 루콕신)과 지르코늄 광물(지르콘)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136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광물과 광석을 함유하는 티타늄 광업 및 광물분리, 그 부가가치, 그리고 이와 통합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의 부문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의 사전동의를 있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된다.

광물과 광석을 함유하는 티타늄 분리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도 내에서 기술 전이와 함께 부가가치시설을 세운다.

나. 광물 분리 작업에서 폐광석 처분은 2004년 원자력 에너지(방사 보호) 규정; 1987년 원자력 에너지(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폐기) 규정과 같은 인도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962년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원자력에너지부에 의하여 발표되는 통지된 물질에 대한 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957년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법 규정 하에서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는 면허 혹은 임차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답사 허가 및 탐광 면허와 허가 받은 채굴 임차권의 조항과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에서만 답사, 탐광 혹은 채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답사허가, 탐광면허 또는 광업 임차권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다.

가. 인도 국민, 또는 1956년 회사법 제3절의 하위 1항의 조건과 부합하는 회사 그리고

나.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유보목록1에 규정된 어떠한 광물에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사전의 승인 없이는 탐광허가 또는 광업 임차권을 받을 수 없다.

설명 - 이 하위 항의 목적 상 인도 국적자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 및 다른 협회일 경우에는 구성원들 모두가 인도 국민이어야 함.

나. 개인의 경우에는 인도 국민에게만 해당됨.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전동의 또는 의뢰에 따라 광물 개발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원자광물의 개발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1960년 광물면허규정)

채굴 임차권 소지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 경영자/책임자, 고용인, 계약자 또는 전차인이 제거한 또는 소비한 어떠한 광물에 대해서도 명기된 기간 비율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 유보조치

인도 정부 결의를 통한 자갈 모래 광물의 추출에 관한 정부정책, 8번/1(1)/97PSU/1422(1998. 10. 6일자)

2006. 1. 18일자의 정부공고 S.O.61(E)은, 1962년 원자력에너지법에서 규정된 물질을 재공고하는 바, 광석과 정광을 함유한 티타늄, 지르코늄 및 그 합금과 화합물, 그리고 지르콘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과 정광을 그 규정 물질 목록에서 제외함

산업(개발 및 규제) 법 (1951)



광업 및 광물(개발 및 규제) 법 (1957)

원자력 에너지 (방사능 보호) 규정 (2004)

원자력 에너지(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폐기) 규정 (1987)

언론발표 6(2008) 과 언론발표 7(2008)

17.

분 야

방위 산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방위산업(제조)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1951년 산업(개발 및 규제)법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제약을 받게 된다.

가. 비거주민 지분은 2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외국인 투자자들 간(비거주인도인 및 비거주인도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해외법인체) 지분양도를 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및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양도에는 3년 동안의 지분양도 금지기간이 있어야 한다.

다. 외국인직접투자는 1951년 산업(개발 및 규제)법에 따른 정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상품 조달 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계하는 인도 회사는 방위 서비스에 의한 조달을 규제하는 규칙 및 절차에 따른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외국인직접투자 허가는 국방부의 협의 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바. 허가는 산업정책 부서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인도 회사/동업조합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 신청인은 인도 회사이거나 동업 조합이어야 한다.

아. 지원 회사의 경영/동업 조합은 인도인의 지배 하에 있어야 하고 회사의 최고 경영책임자와 더불어 위원회의 다수 대표자들은 인도주민이어야 한다.

차. 신청서에는 이사와 경영 책임자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카. 정부는 자국 내 발기인과 외국 합작 자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재정상태와 신용상태를 포함한 경력에 대

- 하여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군대, 우주 및 원자력 분야에 대한 과거 공급 기록이 양호하며 연구개발 기반이 확립된 회사와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또는 설계시설을 우선시한다.
- 타.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과 관련해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음.
- 파. 허가된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외국합작자로부터 제조된 장비의 기준과 실험절차는 면허 소지자에 의하여 적절한 기밀조항 하에 정부지정 품질보증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하. 허가 당국은 제조하려는 무기 및 장비의 범주를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순자산의 적절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 거. 생산 능력 규범은 국방부의 권고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한 허가를 바탕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때 현존하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생산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
- 너. 공기업 부의 지침서에 따라 구입 선호도와 가격 선호도는 공공 부문 단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 더. 개인 제조업체에 의하여 제조된 무기와 탄약은 우선적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내무부와 주정부 관할 하의 그 밖의 정부 기관에게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판매될 수 있다. 그러한 항목은 국가의 다른 어떤 개인/실체에 대하여 판매되어 질 수 없다. 제조된 물품의 수출은 정부지정 군수품제조공장과 공공 방위산업체 체 적용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살상력이 없는 제품들은 국방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중앙 정부 또는 주정부 외에 개인/실체들에게 판매 하는 것이 허가된다.

## 유보조치

산업(개발 및 규제) 법(1951) 제11절 그리고 동 법의 유보목록 1

무기법 - 무기와 탄약에 대한 정의에 대한 2(b)절 및 2(c)절

정부정책 - 언론발표 4(2001) 그리고 언론발표 2(2002)

18.

분 야

석유정제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석유정제분야에서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49%의 지분까지 허용된다. 존속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내국민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박탈하거나 그 지분가치의 회식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석유정제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의 자동항로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석유정제업은 인도정부에 의하여 공고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련된 부문 정책에 따른다.

유보조치

석유법(1934) 및 그 이하 규칙, 규정, 공고

유전(규제 및 개발) 법(1948) 및 그 이하 규칙 및 규정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다른 해상 영역에 관한 법(1976) 및 그 이하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석유 및 천연가스 규제 위원회 법(2006) 및 그 이하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폭발물법(1884) 및 그 이하 정책, 규칙, 규정, 공고, 회보, 지침, 언론발표

정부정책언론발표 4(2006) 및 언론발표 5(2008)

19.

분 야	모든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투자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유보조치	이 협정문의 발효일 이후부터 현존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

20.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지역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유보조치

이 협정문의 발효일 이후부터 현존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

## 부속서 II

### 주 해

1. 제10.8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부속서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거나 또는 더 강화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 (내국민 대우);
- 나. 제10.5조 (이행요건); 또는
- 다. 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에 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3.1)를 참조한다. 적절한 ISIC 코드가 해당 분야 혹은 그 하위 분야에 대하여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도의 경우 이러한 유보는 인도정부 중앙통계국에 의하여 제시된 인도산업분류코드(NIC 1987)를 참조한다. 한국의 경우, 해당 유보에 대하여, 한국통계청에 의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2000)를 참조한다.

3.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국제표준산업분류코드(ISIC 3.1) 혹은 국내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00년, 인도산업분류코드 1987년)에 따라서,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 즉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과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 마.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 사.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유보의 해석에 있어서, 산업분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고려된다. 유보



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들보다 우선한다.

5.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인도의 경우, 비거주자란 인도 공화국 외부에서 합작 혹은 등록법인기구를 포함하는,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인을 말한다.

6.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제6장에 부속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목록만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에 관한 제10장의 제10.5조(이행요건) 및 제10.6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는 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5조(이행요건) 및 제10.6조(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의 투자에 관한 유보는 제10장(투자)의 부속서 I 및 II에만 명시되어있다.

이 장(투자)의 약속과 서비스 장의 약속 간에 어떠한 불합치가 있을 경우, 불합치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장이 우선한다.

7. 한국의 경우, 유보안 8번, 10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23번 및 24번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p>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인도에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8)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p> <p>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p> <p>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p> <p>2. 제 21조(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다음에 대한 청구를 제10장(투자)의 제3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p> <p>가. 대한민국이 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p>

였다. 그리고,

- 나. 각 경우에 맞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러한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러한 조치로부터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0장(투자) 제3절이 준용되며, 제10장 제2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0장 제3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가 없었다면 제10장 제2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부터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기존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2.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국방 산업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에서의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이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업체)의 구주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방위사업법 제35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3.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0.7조(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부속서I 및 부속서II상 약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 (법률 제8985호, 2008.3.21)

4.

분 야

토지 취득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다.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179호, 2008.2.29)

농지법 제6조 (법률 제8852호, 2008.1.29)

5.

분 야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및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6.

분 야	취약집단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없음



7.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 국가지리적정보시스템 포함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국가의 재산권적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불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조치

8.

분 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 및 보육

기존조치

없음

9.

분 야

모든 제조업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품과 포장재료를 재활용하는 의무, 재활용 이행계획 및 그 결과의 제출, 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가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매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조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그리고 제27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제15조, 제16조 그리고 제17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10.

분 야

저공해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리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

자동차 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2006년 1.5%)에 따라 매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 판매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급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조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법률 제 9036호, 2008.3.28)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제21033호, 2008.9.25)

11.

분 야	원자력 에너지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사용 후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 및 유지·보수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전기사업법 (법률 제9017호, 2008.3.28)

12.

분 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 사업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부속서 I상의 에너지산업 (전력) 과 관련된 유보에 의하여 허용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0.5조 (이행요건.1.바항)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기존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 (법률 제8985호, 2008.3.21)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2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전기사업법 제7조, 제73조 제5항 및 제78조 (법률 제9017호, 2008.3.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1호, 2008.10.1)

13.

분 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가스 산업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부속서 I상의 에너지산업 (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인의 소유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기존조치	공기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제19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 2, 제16조 3,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 4,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및 제43조 (법률 제9021호, 2008.3.28)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11조 (2008.3.28) 증권거래법 제203조 (법률 제8985호, 2008.3.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법률 제9071호, 2008.3.28)

14.

분 야

운송 사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우주운송,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 연안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5.

분 야

영화와 비디오의 제작, 배급 및 상영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방송 프로그램 또는 시청각콘텐츠가 대한  
민국 작품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27조 및 제40조  
(법률 9004호, 2008.3.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 (대통령령 20676호, 2008.2.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령 1호, 2008.3.6)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2008.5.18)

16.

분 야

영화와 비디오의 제작, 배급 및 상영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되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이 적용되는 작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25조 (법률 9004호, 2008.3.2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2008.5.19)

17.

분 야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인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부동산 개발,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8.

분 야 지적도 제작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의 제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9.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등급 판정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p>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에는 공식적인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기 전에 생산자를 대신하여 실시되는 검사 또는 테스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p>
기존조치	

20.

분 야

농업, 수렵,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

하위분야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01, 05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보리 도정업,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농업, 임업 및 축산업 관련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부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21.

분 야	어업
하위분야	어업, 수산양식 그리고 어업에 부수되는 서비스 활동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05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어업, 수산양식 그리고 어업에 부수되는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정부 정책

22.

분 야	인쇄 및 출판업
하위분야	신문 발행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 (법률 8852호, 2008.2.29)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대통령령 20676호, 2008.2.29)



23.

분 야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p>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법률 제9071호, 2008.3.28)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045호, 2008.3.28)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기존조치	없음

24.

분 야

영화 및 비디오의 제작, 배급 및 상영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영화 상영(전자 전송 포함), 판촉, 홍보 및 후반제작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법률 9004호, 2008.3.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676호, 2008.2.29)

25.

분 야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44조 및 제61조 (법률 9002호, 2008.3.28)

26.

분 야

농어촌 지역 관광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없음

27.

분 야 도박 및 베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도박과 베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박과 베팅”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를 통한 그러한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게임산업법 제2조에 정의된 “사행성 게임물”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기회와 베팅을 통한 금전적 손실과 이득을 결과로 하는 게임 도구를 포함한다.

기존조치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제28조 (법률 제9005호, 2008.2.2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법률 제9037호, 2008.3.28)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7547호, 2005.5.31)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법률 제8852호, 2008.2.2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형법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법률 제7623호, 2005.7.29)

28.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법집행,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조치

29.

분 야

모든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서비스 챕터의 투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기존조치

부속서 II  
인도공화국의 유보목록

1.

분 야	농업
하위분야	농업과 재배와 같은 모든 농업활동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00(농산품), 인도산업분류01(플랜테이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화초재배, 원예, 종자재배, 축산업, 양어, 수산양식 채소, 버섯재배 및 농업과 그 연관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농업 및 모든 농업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통제된 조건 하에서'란 플랜트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강력히 조작된 비자연적 환경을 말한다. 통제된 조건의 일반적 특징은 경작, 비옥화, 잡초 및 해충 제거, 관개 또는 화분에 심기, 깔짚 덮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재배 작업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농업 및 연관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는 해충 제거, 물주기, 감염된 줄기의 가지치기, 관개시스템 작동, 동물 털깎기 및 가축 서비스(수의 서비스 제외), 종묘 및 원예 서비스, 토양 보존 서비스, 토양 탈염 서비스, 수확, 탈곡, 토지 정리, 토지 배수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분 야	축산업
하위분야	소,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및 버새 사육 혼합 농업을 포함한 낙농업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0121, 0122, 013, 0130, 014, 0140, 015, 0150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소,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및 버새*, 혼합 농업**을 포함한 낙농업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기존조치

\* 버새란 나귀의 품종을 말한다.

\*\* 혼합농업이란 경작과 낙농업을 말한다.

3.

분 야	임업
하위분야	임업, 재목 벌채 및 관련 서비스 활동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05, 국제표준산업분류 02, 020, 0200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임업, 재목 벌채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4.

분 야

어업

하위분야

어업, 어류 부화장 및 양식장의 경영 어업 부수 사업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06, 국제표준산업분류 05, 050 및 0500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인도는 어업, 어류 부화장 및 양식장 어업 부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5.

<b>분 야</b>	유제품
<b>하위분야</b>	분말 우유 제조, 아이스크림 분말, 농축 우유, 버터, 크림, 치즈, 버터기름, 코야 등 저온 살균 우유
<b>산업분류</b>	국제표준산업분류 152 및 1520 인도산업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및 201.9
<b>유보종류</b>	이행요건 (제10.5조)
<b>유보내용</b>	인도는 유제품 제조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b>기존조치</b>	

\*코야란 유제품의 일종을 말한다.

6.

**분 야**

통조림 제조업 및 과일과 야채 보존 식품

**하위분야**

인공 건조과실 및 채소, 일광건조과실 및 채소, 라디에이션 건조 과실 및 채소, 과실 및 채소 주스/농축액/과즙 및 분말 제조, 소스,잼 ,젤리 및 마멀레이드 제조, 피클,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과실 및 채소 보존 식품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및 202.9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통조림 제조업 및 과일과 야채 보존 식품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7.

분야	생선, 갑각류 등의 유사 식품의 가공처리, 통조림 제조업 및 보존
하위분야	일광건조 어물, 어물 및 유사 식품의 라디에이션 보존, 생선 가공처리 및 통조림 제조업, 생선 식품 제조, 개구리다리 가공처리 및 개구리 다리 통조림 제조업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51 및 1512 인도산업분류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및 203.9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가공처리, 통조림 제조업 및 생선, 갑각류 등의 유사 식품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8.

분 야	곡분과자 제조업
하위분야	제빵, 과자, 케이크 및 패스츄리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541 인도산업분류 205.1, 205.2, 205.9.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제과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투자 조항 이행요건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9.

분 야	경화유, 바나스파티, 기* 등 및 식물성 기름
하위분야	경화유, 바나스파티, 기, 식물성 기름과 지방의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514 인도산업분류 210 및 211- 211.1, 211.2, 211.3.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경화유, 바나스파티, 기 및 식물성 기름의 제조업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기(ghee)란 정화된 버터를 말한다.



10.

분 야	증류, 정류 및 주정의 조합, 발효 물질을 이용한 에틸알코올 제조 및 와인 제조
하위분야	와인, 맥아주, 맥주의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551, 1552, 1553 인도산업분류 220, 221 및 222 인도산업분류 222.1, 222.2, 222.3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증류, 정류 및 주정의 조합, 발효 물질을 이용한 에틸알코올 제조 및 와인 제조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1.

분 야

목재 및 목조 제품

하위분야

톱질 및 목재의 평면 작업 베니어 지, 합판 지 및 해당상품의 제조 건축 구조 목조 제품 목조 용기 제조 목조 산업제품의 제조 코르크 및 코르크 제품의 제조 목조 가구 및 정착물의 제조 대나무, 사탕수수 및 정착물의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201, 202 - 2021, 2022, 2023 및 2029  
인도산업분류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9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목재와 목조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2.

분 야

가죽

하위분야

제혁, 큐어링, 끝손질, 부조세공, 가죽옷칠 가죽신발의 제조 가죽의류 제조 가죽 소비재의 제조 모피와 가죽 무역을 위한 다른 날가죽의 폐기, 무두질, 제혁, 마전 및 염색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82, 1820, 19, 191, 1911, 1912, 192, 1920  
인도산업분류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9.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가죽과 가죽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 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3.

분 야

시멘트 및 석면

하위분야

시멘트, 석회 및 회 반죽의 제조, 운모 제조, 석재 화장 및 분쇄, 석면 시멘트 및 다른 시멘트 제품의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2694, 2695, 2696

인도산업분류 324, 325, 326.1, 327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시멘트, 석회 및 회 반죽의 제조, 운모 제조, 석재 화장 및 분쇄, 석면 시멘트 및 다른 시멘트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투자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4.

분 야	에어컨, 냉장고 및 소방기구
하위분야	에어컨, 냉장고 및 소방기구의 제조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355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에어컨, 냉장고 및 소방기구의 제조에 관하여 투자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5.

**분 야**

산업용 폭탄물, 안전 도화선, 뇌관, 봉화

**하위분야**

**산업분류**

인도산업분류 308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무기와 폭탄물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송, 수입, 수출 및 소유를 포함한, 산업용 폭탄물, 안전 도화선, 뇌관, 봉화 분야에 관하여 해당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6.

분 야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송, 수입, 수출 및 소유의 규제에 관하여 해당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7.

분 야	담배 식물의 줄기 제거 작업, 비디의 제조, 담배와 시가 및 시가 제품의 제조
하위분야	담배 식물의 줄기 제거 작업, 재 건조 및 천연 담배 잎 준비 작업과 관련된 다른 모든 작업 비디·시가·담배·코담배·씹는 담배의 제조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16 및 1600 인도산업분류 225, 226, 227, 228 및 229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유보내용	인도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운송, 수입, 수출의 규제에 관하여 해당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8.

분 야

모든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서비스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한, 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기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19.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지역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20.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경제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 유지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 및 집단에 권한 또는 특혜를 주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21.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이행요건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6조)

유보내용

인도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투자 장의 제10.7조(투명성) 조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은 소유지분에 의하여 인도 정부 또는 주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의미하고, 동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또는 발효 이후에 현존하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한다.

기존조치

22.

분 야

토지 취득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종류

내국민 대우 (제10.3조)

유보내용

인도는 비거주자에 의한 농지 취득 및 비거주자에 의한 농업 또는 플랜테이션 활동을 위한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